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06,871,127	48,206,134
일반회계	1,352,474,356	40,574,231
특별회계	254,396,771	7,631,903
공기업특별회계	199,145,945	5,974,3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378,802	2,621,3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1,767,143	3,353,014
기타특별회계	55,250,826	1,657,525
주택사업특별회계	72,555	2,17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001,292	270,039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002,144	540,064
교통사업특별회계	23,463,345	703,900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507,490	105,225

제 2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0,979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3,0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